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3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김남근 · 김문수 · 문금주
문대림 · 이광희 · 이기현
이재관 · 이훈기 · 임미애
전진숙 · 전현희 · 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관련하여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025년 11월 특별 심사에서도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는’ 권고를 한 바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이 지연되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상적 기능 수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5년 11월 특별 심사에서도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를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균형있게 선출·지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위 각 선출·지명기관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출·지명기관은 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출·지명기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

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
-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은 <u>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u> <u>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u> <u>은 후</u>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 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u> <u>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u> <u>보자 중에서</u> ----- ----- ----- ----- ----- <u>이 경우 국회, 대통령 또는 대</u> <u>법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u> <u>사람이 균형있게 선출·지명되</u> <u>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 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 ⑦ (생 략)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u><신 설></u>	<u>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u> <u>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u> <u>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u> <u>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u> <u>천을 위하여 위 각 선출·지명</u>

기관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출·지명기관은 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출·지명기관은 위원회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하는 4명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⑤ (생략) <u><신설></u>	<u>에 따라야 한다.</u> <u>⑨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u> <u>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다.</u>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 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 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 를 의결할 수 있다.</u>
--	--